

예산총칙

202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492,284,094	14,768,523
일반회계		487,970,227	14,639,107
특별회계		4,313,867	129,416
	기타특별회계	4,313,867	129,41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63,691	1,911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91,448	23,743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69,200	2,076
	주차장특별회계	3,389,528	101,68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149,268천 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,200,000천 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